

2004 UIA 실무용역위원회(PPC)

참가보고

본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건축 설계 부분을 포함한 전문직능 자격을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한 후, 민간 직능 단체인 UIA가 자발적으로 건축설계 실무용역에 관하여 국가 간 상호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발족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에서는 6년 간의 긴 논의를 거쳐 "건축실무 용역에 관한 국제 표준 권고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과 7개의 관련 부분의 지침 안을 작성하였다. 지침 안 내용에는 전문성에 관한 정의와 16개항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 정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중 12개항은 이미 UIA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개 항목은 이사회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 3개 항목은 유보된 상태이다. 본 기본 권고안은 1999년 북경 UI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주>

올해 제13차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PPC)회의는 18개국 40여명이 참석하여 2004년 3월 10일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3월 14일까지 4일간 Kuala Lumpur 시내 Nikko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에서는 FKA명의로 필자와 심재호 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북경 총회에서 통과된 UIA Accord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세부지침은 참여국의 발의로 정해진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항목이 상정되면 Draft Panel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각 국에서 상호 인정 협상

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안을 수립한다. 수립된 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UIA 이사회에 상정되며, 이사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투표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최종 추진 받는 절차를 따른다.

회의 진행은 참가국 대표의 자기소개에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사고 희생자의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2003년 회의록은 일부 문구수정으로 채택되었고, 본 회의안건 상정이후 2003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국에서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과 본 위원회 Website의 개선내용, 자문위원회의 활용방안이 사무국에 의해 간략히 설명되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내부 지침서의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Accord, Guideline, Note 순으로 하기로 하였다. 즉 법, 시행령, 조례로 나누어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2005년부터 3년 간 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 각 참가국에서 2004년 7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2005년 7월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총회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사례, 건축사 지속교육 문제와 더불어 이미 북경총회에서 통과된 16개 세부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다.

상정된 안건의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내용은 적어도 2005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Louis Cox의 UIA-Unesco 교육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현재 UIA-Unesco 교육위원회에서 UIA-Validation System을 전 PPC의장이었던 James Scheeler가 초안을 작성중이며, 그 내용 중 주요사항으로는 학생교환 Program, 계속교육, UIA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Unesco는 설립 이념에 맞는 각국의 과학, 문화 발전 문제만 다루고 교육문제는 별도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UIA-Unesco 교육위원회가 무산되

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UIA-Validation System 적용여부에 따라 교육인증 문제는 탄력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 스페인 Jordi가 준비한 국제 전문용역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표준양식(Standard Form on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새로운 양식은 각 질문내용이 정확히 그리고 번역 또는 해석의 상이점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차이와 각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제도의 다양성으로 답변내용이 서로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조사서는 104개국에 배포되었으며, 76개국이 답변서로 보냈으며, 이를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각 국에서는 조사내용 중 회의를 통하여 분명해진 일부 사항은 수정하여 재 제출하기로 하였다.

독일 Tillman Prinz가 발표한 컴퓨터 업무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적인 IT 산업의 추세가 WTO의 Mode 1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제적인 전화통화와 같이 용역의 교류 또는 결과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E-Business가 WTO의 특별한 규제 없이 국가 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설계용역의 Computer Practice와 관련하여 규정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전제를

설명하였다. 본 규정의 정책이 건축용역 결과물의 안전한 정보이동, 저작권보호, 소비자의 법적인 권익 등이 전제되었으나 급변하는 IT산업과 국제적인 입찰의 공고와 절차 등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거의 실시간 변화하는 기법에 대응하기에는 본 규정을 작성 공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공감을 얻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기본방침의 내용수정과 더불어 새로운 지침수립을 요구하였으며, Guideline이나 Policy가 아닌 Practice Note 또는 정보교환 수준으로 등급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후 본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어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Shinjiro Wachi가 발표한 실무용역의 형태에서는 정책의 기본정식인 각 국에서 건축사는 윤리에 입각하여 건축설계 활동을 하는데 있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실무형태는 공익을 우선으로 건축사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현지국의 제도와 여건에 구성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형태를 구분하는 대원칙을 소유권, 용역의 조정, 책임으로 하고 주요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 특수형태, 기타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실무형태는 단독운영, 분산 운영, 제한분산 운영으로 나누고 특수형태로는 공동운영, 협력운영, 공동참여방식, 대학운영기구, 다분야 참여로 분류하고 기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형태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제적인 논의에 있어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실제로 상기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여 거의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운

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입찰제도와 참여방식에 대해 폭 넓은 정의를 해두는 것으로 하였다.

각 실무형태에 따른 구성, 실무책임, 한계 등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실무범위(Scope of Practice)의 논의에 있어서는 UIA 기본방침이 건축사 개인이 소비자로부터 부여받은 용역을 확대하되 그 범위가 공공의 이익과 건축사의 윤리, 해당 정부의 방침 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건축사의 주요업무로는 프로젝트관리, 조사연구, 공사비 적정성 조정, 설계, 입찰지원, 감리, 유지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내용을 정의하였다.

부가적 업무로는 사업성검토, 설계지침서작성, 건물조사업무, 토지이용협상, 광고, 팜플렛 작성, 생애주기계획,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관리, 조경설계, 실내설계, 그래픽설계, 음향설계, 환경설계, 중재 등 건축물 또는 단지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다.

프랑스 Isabelle Bucher를 대신하여 발표한 건축전문가단체의 역할에서는 첫째,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통한 차별대우가 제거되어 자유로운 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언급되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은 건축설계의 경우 생태환경보호 환경적 맥락과 재생가능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며, 셋째, 전문가의 이익에서는 주재국내의 건축사와 마찰을 줄이며, 건축사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기술



참가국 대표단



아프리카 처음 참가한 Mauritius, South Africa 대표와 함께한 심재호 위원



처음 참가한 러시아 대표와 함께한 이근창 국제위원장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내에는 감사할 수 있는 단체로 정부와 연계된 단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민간단체, 지역내 기구와 전문기구를 조정하는 상위단체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구분으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단체, 단체와 단체를 통합조정하는 연합체, 자격소유자가 조직한 독립협회, 기타 UIA, Arcasia, ACE, Accee, FPAA, UAA와 같은 건축관련 국제연합회 각 국에 조직된 건축사관련 조직(RIBA, NCARB, AIA, KIRA, KIA)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상기 Guideline 실무용역형태(Form of Practice), 실무용역범위(Scope of Practice)와 건축전문단체(Professional Bodies)는 1999년 북경총회에서 Accord가 통과된 이후 세부 Guideline이 확정되지 않아 유보되어 있었으나 금번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Michael Peck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발표하였던 건축물 구매에 대한 건축실무(Architectural Practice에 Building Project Procurement)를 다양한 설계 제공 방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부제의 제목을 프로젝트 제공 시스템(Building Delivery System)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건축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방식이 대형 Project의 출현으로 여러 형태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는 자체의 평가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고객과 일반공공

에 이익을 주는 전문 지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설계, 감리, 시공을 별도로 하는 방법, 2단계 입찰방식,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다자계약방식 등이 각 참여자의 책임과 임무의 한계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설계·시공방식이 개발 도상국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자의 윤리와 업무한계에 대해 각 국에 이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예산의 편성, 설계비책정, 책임의 한계, 설계변경 절차, 의견의 조정, 참여자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점검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

상호인정 합의(Mutual Recognition Agreement)방침에 대한 초안은 작년 대표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EAS Mohamed가 발표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보다 체계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스페인의 Jordi가 담당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Accord와 Guideline이 결국 각 국간 쌍방 또는 다자간 건축사 인정에 있으나 UIA가 WT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작년회의에서 UIA이사회에 상정한 주재국에서의 실무지침(Recommended guideline on practice in a host nation)이 반려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이다.

참여자 모두 본 Guideline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회계사 기준이 작성되어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Jordi씨는 기본적인 언어의 정의 즉 GATT, GATS, WTO, MRA, FTA, PHN, MFN 등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한 후 건축실에 관한 사항은 각 국의 WTO 협상창구에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세부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되었고,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 협상 기구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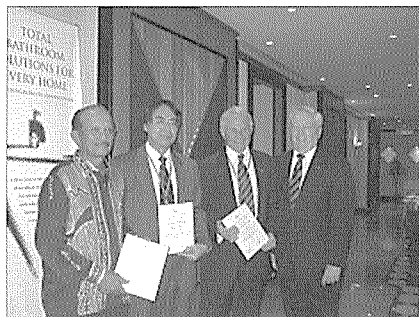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기본정책이 각국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 문화, 사회, 국민의 안전, 공공성의 기준 등 다양한 배경을 통합, 조정하여 동일성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의 설명과 더불어 사전행정절차로 본 규정 사용의 의향서 합의를 추천하였다. MRA에서 포함될 내용과 기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적 적용, 수행방안, 협의의 수정 등이 논의되었으나 원칙적인 민주방식에 의한 내용을 기술하여 재차 점검 확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미국의 David Harris씨가 발표한 건축물의 표준과 규정(Accord on building codes and standards)은 선진국에 의해 채택된 안건으로 제품 및 공법의 표준화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각 국의 규정 및 적용표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는 건축설계시 공사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폭넓은 자재를 생산하고,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국가의 유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한국의 기준과 규정은 제출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전까지는 준비하여 제출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규정과 제품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전임회장 Tan PEI Ing



PPC 13차 회의에 개근 참석한 말레이시아 Hisham ALBAKRI, 일본 Shinjiro Wachi 오스트레일리아 Michael Peck와 위원장 Russell Ke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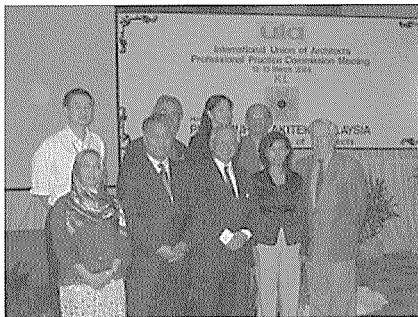
회의장에서 대표단

말레이시아 ESA Mohammed가 발표한 정부 부처와의 Communication부분은 참여자들이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WTO 협상 청구인 각국의 부처와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다. 각 국에서는 건설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간 본 협의 내용이 원활히 전달되어 협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사례를 제출할 것이 요청되었다.

다음 회의의 장소는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없었으며, 회장단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참여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그간 본 위원회에 13차례 모두 참석한 오스트레일리아의 Michael Peck, 말레이시아 Hisham Albakri, 일본의 ShinJiro Wachi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13차 위원회는 유치한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는 작년 인도 Deli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장소를 바꾸게 된 배경설명에서 인도의 입·출입의 문제와 인도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아시아권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승낙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회의는 잘 정리되어 진행되었으며, 자재업체로부터 Sponsor를 받아 점심, 저녁, Tour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였다.

본 위원회의 성격이 건축사의 MRA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정, 건설환경들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큰 틀에서의 동질성을 맞추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UIA에서 WTO에 요구한 공식



회장단과 주최측 대표

적인 협의기구로 인정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EU와 미국과의 MRA가 성사되지 않는 이유로 독일의 Sven Silcher씨에 의하면 EU내에서는 각국의 건축사협회에서 통합, 조정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의 사정(52개주를 통합하는 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본 위원회에 미결된 안건은 4개 Guideline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며, 국제적으로 상용하기 힘들거나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차기 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없고 새로운 참여국의 등장과 기존 참여국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내용의 숙지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과 2005~2008년에 논의 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미 1999년 북경 총회와 2002년 베를린 총회를 통해 통과된 Accord에 의해 금번 회의에서 최종(초)안을 만든 3개안과 수정안 1개를 포함하여 세부 Guideline 16개 모두 위원회에서 정리되었고, 추가적인 안건이 위원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든지 일정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면 위원회의 업무의 축소 또는 존립에 대한 논의가 2005년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을 주시하면서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사 상호인정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위원 : 이근창, 심재호>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8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8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8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원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남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광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천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